사적 재산인가, 직업적 거래인가? 스위스 세법상의 문제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스위스 거주 개인에게 이 질문은 가상자산 이익이 연방직접세법(DFTA) 제16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사적 자본이득인지, 아니면 제18조에 따른 과세 대상 자영업 소득인지를 결정합니다. 후자의 경우 사회보장 기여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1] 연방세무청(FTA)의 2012년 7월 27일 회람 제36호는 안전항(safe harbour)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추가 심사 없이 사적 투자자로 취급됩니다. 안전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납세자가 직업적 거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같은 지표를 비교 형량하는 종합 평가가 시작될 뿐입니다.[2]

안전항의 다섯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6개월의 보유 기간, 과세 기간 중 거래량이 기초 포트폴리오 가치의 5배를 넘지 않을 것, 자본이득이 순소득의 50% 미만일 것, 차입 금융이 없을 것(또는 투자소득이 이자를 초과할 것), 그리고 파생상품을 헤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이 기준 하나하나에 부담을 줍니다.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은 어느 경우에나 소득입니다. 자동화 마켓메이커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지속적인 미세 거래가 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생하여, 납세자가 가만히 있어도 장부상으로는 회전율 기준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칸톤들은 프로토콜에 의한 자동 리밸런싱이 납세자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였지만, 실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3]

질문의 순서

1. 지갑과 거래소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회람 제36호의 다섯 가지 기준을 계산합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이익을 비과세로, 보유분을 재산세 대상으로 신고하고, 계산 자료를 보관합니다.
2.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평가합니다. 빈도와 거래량, 보유 기간, 차입 자금의 사용,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 체계적인 방법, 직업과의 관련성(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가상자산 펀드매니저는 위험에 노출됨), 그리고 그 거래가 납세자의 생활 수준 유지에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3. 소득 사건과 처분 사건을 구분합니다. 스테이킹, 대여 이자, 유동성 공급 수수료, 대가가 있는 에어드롭, 채굴 보상은 거래자 지위와 관계없이 수령 시점의 시장가치로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연방세무청은 하드포크와 대가 없는 에어드롭을 수령 시점의 소득으로 취급하며, 칸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4]
4. 종합 평가 결과가 직업적 거래를 가리킨다면 그 결과를 모델링합니다. 순이익에 대한 한계세율의 소득세, 손실의 공제 가능성, 약 10%의 AHV 기여금, 그리고 7년간의 손실 이월 가능성입니다.
5. 연말 전에 구조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활발한 거래를 회사로 옮기는 것(추크의 법인세는 낮고 배당은 부분 과세됨), 투기적 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하는 것, 보유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6. 금액이 큰 경우 칸톤 세무당국에 사전결정(ruling)을 요청합니다. 추크와 취리히 모두 거래자 지위에 관한 사전결정을 내리며, 공개된 사실관계에 구속되는 사전결정은 소급 위험을 제거합니다.[5]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지표	사적 재산을 가리키는 경우	직업적 거래를 가리키는 경우
보유 기간	대부분 6개월 초과	며칠 또는 몇 주
포트폴리오 대비 회전율	기초 가치의 5배 미만	몇 배수에 이름
소득 중 비중	이익이 순소득의 절반 미만	이익이 주된 소득
자금 조달	자기 자금	마진, 대출, 차입 프로토콜
파생상품	헤지 목적만	투기 목적의 무기한 선물, 옵션
방법	간헐적, 매수 후 보유	체계적, 봇, 차익거래
직업	무관	트레이더, 펀드매니저, 마켓메이커

고객의 질문

「추크의 제 아파트에서 세 개의 거래소에 걸쳐 차익거래 봇을 돌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40만 스위스프랑을 벌었습니다. 비과세인가요?」 거의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봇의 회전율은 5배 기준을 몇 자릿수나 넘을 것이고, 보유 기간은 초 단위로 측정되며, 방법은 체계적입니다. 그 이익은 자영업 소득으로서 소득세와 AHV 기여금의 대상입니다. 더 나은 질문은 1월 1일부터 추크의 유한회사(GmbH)를 통해 봇을 운영할 것인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 부담이 합산 약 12%의 법인세로 바뀌고, 개인 과세는 배당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주

1. Direct Federal Tax Act, 1990년 12월 14일(연방직접세법, DFTA; DBG, SR 642.11), 제16조 제3항 및 제18조 제2항; 제G편 제II장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 연방세무청 회람 제36호, 2012년 7월 27일, Gewerbsmässiger Wertschriftenhandel, 제3절; 2019년 8월 27일 가상화폐에 관한 연방세무청 실무 문서(2021년 12월 14일 개정)는 이 회람을 가상자산에 적용함; 제G편 제II장 참조. ↩
3. 추크와 취리히의 칸톤 실무는 제G편 제II장 및 제III장에서 비교함. ↩
4. 가상화폐에 관한 연방세무청 실무 문서, 제2.3절~제2.6절; 제G편 제II장 참조. ↩
5. 스위스의 사전결정 실무는 제G편 제I장에서 설명함.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